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18가단5252789 판결 [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3 선고 2021나7049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18가단5252789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

담당변호사 김은미, 부광득, 윤정노, 이인창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

담당변호사 조창권

변론종결 2021. 8. 20.

판결선고 2021. 10. 1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8. 11. 19.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9. 접수 제2110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C는 부친인 D이 2016. 10. 24. 사망 후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원고 명의로 된 상속재산 약 88억 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이라 한다)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,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를 알려 상속시 미신고 및 미납부를 이유로 한 가산세 등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본인 및 다른 상속인들에 관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위 상속재산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로 하여금 상속세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.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인 E, F, G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산세 1,725,500,231원을 포함한 추가 상속세 합계 4,662,420,940원을 자진납부하였고, 원고의 위 추가 상속세 등 납부일 기준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합계액은 591,975,713원인바, C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의 손해 591,975,713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또는, C는 막대한 세금 부담 및 혼외자에게 재산을 나누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H의료재단에 출연하면 원고의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속재산인 이 사건 금원을 처분하도록 한 뒤 그 중 일부로 토지를 매수하고 그 토지 및 나머지 금원 상당 부분을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H의료재단에 모두 출연하게 함으로써 위 상속재산으로 출연한 75억 8천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,749,230,770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C는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자신의

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4/5 지분 전부를 재산분할을 빙자하여 피고에게 넘겨주었으므로, 원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재산분할약정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.

2. 판단

을 제10,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광주지방국세청은 2021. 4. 29.자로 원고 등이 추가 납부한 상속세 및 가산세 합계 4,662,420,940원에 관하여 세무조사 결과 기결정·경정된 조사 결과에 대한 수정신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신고 납부분인 위 금액을 환급하고자 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가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속세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고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의 상당 부분을 C의 기망에 의하여 H의료재단에 출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유지현

별지

목 록

1.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호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강남구

철근 콘크리트조

슬래브지붕 15

층 아파트

1층 784.86㎡

2층 784.86㎡

3층 784.86㎡

4층 784.86㎡

5층 784.86㎡

6층 784.86㎡

7층 784.86㎡

8층 784.86㎡

9층 784.86㎡

10층 784.86㎡

11층 784.86㎡

12층 784.86㎡

13층 784.86㎡

14층 784.86㎡

15층 784.86㎡

옥탑 115.08㎡ 지하층

786.06㎡

부속 철근콘크리트조

슬래브지붕

단층 중간 기계실

지하층 755.70㎡ 1층

20.07㎡

부속 철근콘크리트조

슬래브지붕

단층 공중 변소

지하층 90.00㎡

부속 철근콘크리트조

슬래브지붕

2층 중앙공급실 및

관리사무소

지하층 1179.40㎡

1층 246.00㎡ 2층 274.80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 72674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8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

196.21㎡

대지권의 종류 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21984분의 26.280 끝.

